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64

발의연월일: 2022. 6. 15.

발 의 자:전주혜·강민국·김승수

서일준 · 서정숙 · 유상범

윤주경 • 윤창현 • 정우택

조해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현행 잠정조치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 20조).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 적 전자장치 부착

제10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또는 제3호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치) ①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	
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	
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④ <u>제1항제3호의2 및</u>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	<u>제4호</u>
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	
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저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 우에는 법원공무원, <u>사법경찰관 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 무원</u>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u>제9</u> 지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 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호	
<u> 의2</u>	
<u>.</u>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사법경찰관	
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u>또는 보호관찰관</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u>제9</u>	
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	
<u>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u> 호의2	